

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관련 Q&A



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절차는 어떻게 됩니까?

-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중증장애인이며, “경력, 자격증, 학위”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,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본인의 장애 등급과 유형을 확인하신 후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.

장애등급	장 애 유 형
1급	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지적, 자폐성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, 안면, 장루 및 요루, 뇌전증
2급	
3급	지체(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), 뇌병변, 시각, 지적, 자폐성, 정신, 심장, 호흡기, 뇌전증
기타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



복수의 모집단위에 응시가 가능합니까?

- 모집단위 중 한 곳에만 하나의 응시요건을 선택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.



원서접수는 인터넷과 우편접수를 모두 해야 하나요?

- 원서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(<http://gosi.kr>)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하셔야 완료됩니다.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


응시자격요건 중 '경력'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, 응시요건에 제시된 '관련분야'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관련분야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경력과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하며, '관련분야' 경력 인정 여부는 서류전형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



경력 요건 응시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?

-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을 했을 때 관련분야에서 재직(연구·근무)하지 않은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
- 따라서, 시험공고일이 2018.2.28.이므로 역산하면, 2015.2.27.에서 2018.2.27.까지 모집단위에서 제시하는 관련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.



자격증+경력 요건의 경우에도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나요?

-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



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?

-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경력은 “주 9시간” 강의한 경우에 “주 40시간”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
*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조(교원의 교수시간)



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, 근무경력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- 주 40시간 전일근무가 아니라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계산합니다.
- *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⇒ 2년 인정



기본서류 작성 서식의 모든 부분을 기재해야 하나요?

- 기본서류는 원칙적으로 응시자의 지원하는 모집단위 응시요건과 관련된 부분만 작성하면 되고, 그 외 부분은 선택사항(응시자 판단)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다만, 지원동기 및 직무수행계획 부분은 모든 응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.
-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.



증빙서류 제출시 이전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이 곤란한 경우,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으로 경력증명을 대체할 수 있나요?

- 이전 근무처에서의 경력 증명이 어려울 경우, 경력증명서 대신 고용보험납입 증명서와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'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텍스 및 관할 세무서)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 갈음할 수 있으나, 세부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분야 인정여부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

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성적은 공개하나요?

-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성적은 객관식 시험과는 달리 평정결과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, 시험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판례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.
- *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
- ** 대법원 2003.3.14. 선고 2000두6114, 대법원 2008.12.14. 선고 2008두8970 등



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사항은 어떻게 기재하나요?

- 면접시험은 과제작성과 면접위원과의 질문응답으로 진행됩니다. 아래 예시와 본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편의지원 신청 시 본인의 장애유형과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편의지원 예시>

장애유형	편의지원 내용
지체장애 (상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▶ 관련서식 확대 제공 ▶ 자료작성시간 10분 연장
지체장애 (하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휠체어 이동 가능 층 배치(휠체어 이용자)
뇌병변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▶ 관련서식 확대 제공 ▶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층 배치 ▶ 자료작성시간 10분 연장 ▶ 필담면접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▶ 면접위원과의 거리 1m 내외로 가깝게 조정
시각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▶ 관련서식 확대 제공 ▶ 관련서식 점자 지원 ▶ 자료작성 타이핑 인력 제공 ▶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
청각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 등) 지원 ▶ 필담면접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▶ 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 ▶ 면접위원과의 거리 1m 내외로 가깝게 조정 ▶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



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?
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, 임용예정부처에서는 인력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시기를 결정하므로 임용시기는 부처별로 상이합니다. 구체적인 임용시기는 해당 임용예정부처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.



최종합격자에 대한 기본교육은 언제 실시하나요?

- 2018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기본교육은 2018년 10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.